

#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대상인지

## 1 질의

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'05년 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

## 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5조 단서에서 “다만, 무허가 건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.

[2014.5.21. 토지정책과-3297]